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

장 : 100 지방세수입
관 : 110 지방세
항 : 111 보통세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총 계	125,300,000	102,860,000	22,440,000
100 지방세수입	7,396,000	6,397,000	999,000
110 지방세	7,396,000	6,397,000	999,000
111 보통세	6,774,000	5,787,000	987,000
111-03 면허세	284,000	281,000	3,000
[일반회계]	284,000		
< 세무과 >	284,000		
◎ 면허세 목표액 284,000,000원 =	284,000		
111-05 재산세	6,490,000	5,506,000	984,000
[일반회계]	6,490,000		
< 세무과 >	6,490,000		
◎ 재산세 목표액 6,490,000,000원 =	6,490,000		
112 목적세	405,000	372,000	33,000
112-03 사업소세	405,000	372,000	33,000
[일반회계]	405,000		
< 세무과 >	405,000		
◎ 사업소세 목표액 405,000,000원 =	405,000		
113 지난년도수입	217,000	238,000	△21,000
113-01 지난년도수입	217,000	238,000	△21,000
[일반회계]	217,000		
< 세무과 >	217,000		
◎ 지난년도 수입목표액 217,000,000원 =	217,000		
200 세외수입	14,683,450	13,183,459	1,499,991
210 경상적세외수입	5,936,879	5,469,010	467,869
211 재산임대수입	40,402	40,400	2
211-01 국유재산임대료	18,802	18,800	2
[일반회계]	18,802		
< 지적과 >	18,802		
◎ 국유재산 임대료 385,000원*3,907㎡*25/1,000*50/100 =	18,802		
211-02 공유재산임대료	21,600	21,600	0
[일반회계]	21,600		
< 지적과 >	21,600		
◎ 공유재산 임대료 480,000원*1,800㎡*25/1,000 =	21,600		

장 : 200 세외수입
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
항 : 212 사용료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12 사용료수입		358,288	289,580	68,708
212-01 도로사용료		339,010	270,302	68,708
[일반회계]		339,010		
< 건축주택과 >		14,995		
◎ 도로공간 점용료	38,950원*385㎡ =	14,995		
< 건설과 >		324,015		
◎ 도로점용료		301,050		
○ 공중전화	36,150원*80대*50/100 =	1,446		
○ 전주	1,250원*6,430본*50/100 =	4,018		
○ 지하관로	1,500원*282,319m*50/100 =	211,739		
○ 보차도	195,000원*68건 =	13,260		
○ 사설안내표지판	67,750원*50건 =	3,387		
○ 도로일시점용료	300원*1,400㎡*160일 =	67,200		
◎ 도로사용료		22,965		
○ 도로부지(국)	304,000원*5,500㎡*2.5/100*50/100 =	20,900		
○ 도로부지(구)	403,000원*205㎡*2.5/100 =	2,065		
212-02 하천사용료		12,778	12,778	0
[일반회계]		12,778		
< 건설과 >		12,778		
◎ 하천사용료		12,778		
○ 구거(건교부)	574,000원*2,700㎡*0.5/100 =	7,749		
○ 구거(구)	528,000원*381㎡*2.5/100 =	5,029		
212-08 기타사용료		6,500	6,500	0
[일반회계]		6,500		
< 총무과 >		6,500		
◎ 대구은행출장소 사용료	6,500,000원*1년 =	6,500		
213 수수료수입		3,014,071	2,842,656	171,415
213-01 증지수입		491,734	523,966	△32,232
[일반회계]		491,734		
< 민원행정과 >		33,790		
◎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	350원*35,000건 =	12,250		
◎ 어디서나 민원 발급 수수료	7,500,000원*1년 =	7,500		
◎ G4C 민원 정산 수수료	4,000,000원*1년 =	4,000		
◎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	2,000,000원*1년 =	2,000		

장 : 200 세외수입
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
항 : 213 수수료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◎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	600원*5,400건 =	3,240		
◎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수수료	600원*8,000건 =	4,800		
< 세무과 >		332,392		
◎ 주민등록 등초본발급	131,220,000원 =	131,220		
◎ 주민등록증 분실	44,095,000원 =	44,095		
◎ 인감증명 발급	89,528,000원 =	89,528		
◎ 세무제증명발급	13,355,000원 =	13,355		
◎ 기타제증명발급	54,194,000원 =	54,194		
< 위생과 >		22,000		
◎ 각종 위생허가	16,000원*1,375건 =	22,000		
< 건축주택과 >		59,800		
◎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	16,000원*2,300건 =	36,800		
◎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수수료	1,000원*23,000건 =	23,000		
< 지역교통과 >		4,752		
◎ 자동차등록원부(관내)발급	300원*480건*12월 =	1,728		
◎ 자동차등록원부(관외)발급	1,300원*140건*12월 =	2,184		
◎ 자동차등록증 발급	700원*100건*12월 =	840		
< 지적과 >		35,900		
◎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	800원*1,000건 =	800		
◎ 토지대장등본 발급	500원*35,000건 =	17,500		
◎ 지적도등본 발급	700원*8,000건 =	5,600		
◎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	1,000원*12,000건 =	12,000		
< 보건소 >		3,100		
◎ 인허가	10,000원*200건 =	2,000		
◎ 제증명	500원*2,200건 =	1,100		
213-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		1,143,820	1,067,711	76,109
[일반회계]		1,143,820		
< 환경관리과 >		1,143,820		
◎ 쓰레기봉투 판매수입		1,143,820		
○ 5ℓ	112원*40,000매 =	4,480		
○ 10ℓ	204원*580,000매 =	118,320		
○ 20ℓ	398원*840,000매 =	334,320		
○ 30ℓ	591원*330,000매 =	195,030		
○ 50ℓ	969원*270,000매 =	261,630		

장 : 200 세외수입
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
항 : 213 수수료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○ 100ℓ	1,917원*120,000매 =	230,040		
213-04 기타수수료		1,378,517	1,250,979	127,538
[일반회계]		1,378,517		
< 환경관리과 >		767,240		
◎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		607,240		
○ 3ℓ	75원*1,500,000매 =	112,500		
○ 5ℓ	112원*1,500,000매 =	168,000		
○ 20ℓ	398원*100,000매 =	39,800		
○ 120ℓ	2,388원*30,000매 =	71,640		
○ 공동주택	85,300,000원*1년 =	85,300		
○ 단독주택	130,000,000원*1회 =	130,000		
◎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	160,000,000원*1년 =	160,000		
< 지역교통과 >		372,000		
◎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	30,000원*1,000대*12월 =	360,000		
◎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	1,000원*1,000대*12월 =	12,000		
< 보건소 >		239,277		
◎ 의과진료비		99,288		
○ 원외처방	3,940원*22,000건 =	86,680		
○ 원내처방(물리치료)	3,940원*3,200건 =	12,608		
◎ 구강보건센터 운영		39,000		
○ 스켈링	25,000원*700건 =	17,500		
○ 홈메우기	5,000원*3,000건 =	15,000		
○ 치면세마	10,000원*50건 =	500		
○ 불소도포	10,000원*600건 =	6,000		
◎ 예방접종료		45,755		
○ 간염	3,400원*2,000명 =	6,800		
○ 인플루엔자	7,350원*5,300명 =	38,955		
◎ 검사수수료		55,234		
○ X선검진	4,360원*500건 =	2,180		
○ 혈액형검사	1,310원*100건 =	131		
○ O.T.P.T 검사	3,360원*100건 =	336		
○ 간기능검사	19,760원*150건 =	2,964		
○ 간염검사	6,310원*1,000건 =	6,310		
○ 건강진단(보건증)	1,500원*13,000건 =	19,500		

장 : 200 세외수입
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
항 : 213 수수료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○ 적성검사	3,940원*500건 =	1,970		
○ 건강진단서	16,190원*1,300건 =	21,047		
○ TG(중성지방)	3,040원*100건 =	304		
○ 콜레스테롤검사	1,640원*300건 =	492		
215 징수교부금수입		2,097,118	1,969,374	127,744
215-01 징수교부금수입		2,097,118	1,969,374	127,744
[일반회계]		2,097,118		
< 세무과 >		1,518,960		
◎ 시세징수교부금수입		1,469,250		
○ 취득세	13,161,000,000원*3/100 =	394,830		
○ 등록세	13,561,000,000원*3/100 =	406,830		
○ 주민세	9,073,000,000원*3/100 =	272,190		
○ 자동차세	7,444,000,000원*3/100 =	223,320		
○ 도시계획세	4,579,000,000원*3/100 =	137,370		
○ 공동시설세	1,131,000,000원*3/100 =	33,930		
○ 지역개발세	26,000,000원*3/100 =	780		
◎ 과년도수입	1,657,000,000원*3/100 =	49,710		
< 환경관리과 >		192,536		
◎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	192,488,000원 =	192,488		
◎ 환경오염 배출부과금	533,334원*9/100 =	48		
< 건축주택과 >		3,752		
◎ 학교용지부담금	3,752,000원 =	3,752		
< 건설과 >		379,100		
◎ 사용료 징수교부금		379,100		
○ 도로사용료	297,000,000원 =	297,000		
○ 하천사용료	1,100,000원 =	1,100		
○ 하수도사용료	81,000,000원*1년 =	81,000		
< 지역교통과 >		2,470		
◎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	550,000원*1년 =	550		
◎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	1,920,000원*1년 =	1,920		
< 보건소 >		300		
◎ 항결핵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	300,000원*1년 =	300		
216 이자수입		427,000	327,000	100,000

장 : 200 세외수입
관 : 210 경상적세외수입
항 : 216 이자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420,000	320,000	100,000
[일반회계]	420,000		
< 세무과 >	420,000		
◎ 저축성예금 410,000,000원 =	410,000		
◎ 요구불예금 10,000,000원 =	10,000		
216-03 기타이자수입	7,000	7,000	0
[일반회계]	7,000		
< 총무과 >	7,000		
◎ 세입세출외 현금 7,000,000원*1년 =	7,000		
220 임시적세외수입	8,746,571	7,714,449	1,032,122
221 재산매각수입	65,065	61,200	3,865
221-01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	16,065	19,200	△3,135
[일반회계]	16,065		
< 지적과 >	16,065		
◎ 국유재산매각수입 700,000원*150㎡*15.3/100 =	16,065		
221-02 시·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	49,000	42,000	7,000
[일반회계]	49,000		
< 지적과 >	49,000		
◎ 공유재산매각수입 700,000원*70㎡ =	49,000		
222 순세계잉여금	5,501,080	4,224,137	1,276,943
222-01 순세계잉여금	5,501,080	4,224,137	1,276,943
[일반회계]	5,501,080		
< 기획감사실 >	5,501,080		
◎ 순세계잉여금 5,501,080,000원 =	5,501,080		
223 이월금	400,000	400,000	0
223-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	200,000	200,000	0
[일반회계]	200,000		
< 기획감사실 >	200,000		
◎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,000,000원 =	200,000		
223-02 시·도비보조금사용잔액	200,000	200,000	0
[일반회계]	200,000		
< 기획감사실 >	200,000		
◎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0,000,000원 =	200,000		
227 부담금	505,000	800,000	△295,000

장 : 200 세외수입
관 : 220 임시적세외수입
항 : 227 부담금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227-02 일반부담금	505,000	800,000	△295,000
[일반회계]	505,000		
< 지역경제과 >	5,000		
◎ 수목훼손 복구비 5,000,000원 =	5,000		
< 건설과 >	500,000		
◎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500,000,000원*1식 =	500,000		
228 잡수입	1,389,026	1,374,595	14,431
228-01 불용품매각대	3,000	3,000	0
[일반회계]	3,000		
< 총무과 >	3,000		
◎ 불용품 매각대금 3,000,000원*1년 =	3,000		
228-02 변상금	2,000	7,000	△5,000
[일반회계]	2,000		
< 지적과 >	2,000		
◎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2,000,000원*1년 =	2,000		
228-03 위약금	500	500	0
[일반회계]	500		
< 총무과 >	500		
◎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 500,000원*1년 =	500		
228-04 과태료및범칙금수입	1,350,810	1,346,975	3,835
[일반회계]	1,350,810		
< 문화공보과 >	500		
◎ 음반·비디오물 위반업소 과징금 500,000원*1년 =	500		
< 민원행정과 >	5,400		
◎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5,400,000원*1년 =	5,400		
< 세무과 >	74,410		
◎ 주민등록위반과태료 74,410,000원 =	74,410		
< 복지지원과 >	7,400		
◎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1,000,000원*5건*1년 =	5,000		
◎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0,000원*2건*12개월 =	2,400		
< 환경관리과 >	79,600		
◎ 정화조 청소미이행자 과태료 200,000원*10건 =	2,000		
◎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 100,000원*400건 =	40,000		

장 : 200 세외수입
관 : 220 임시적세외수입
항 : 228 잡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◎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50,000원*150건 =	7,500		
◎ 정밀검사 미이행자 과태료 300,000원*90건 =	27,000		
◎ 기타 환경오염 과태료 300,000원*7건 =	2,100		
◎ 1회용품 신고 과태료 50,000원*20건 =	1,000		
< 위생과 >	25,000		
◎ 위생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250,000원*40개소 =	10,000		
◎ 위생 관련 행정처분 과징금 50,000원*10일*30개소 =	15,000		
< 건축주택과 >	88,000		
◎ 불법광고물 게첨과태료 200,000원*140명 =	28,000		
◎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,000,000원*30건 =	60,000		
< 건설과 >	6,000		
◎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100,000원*60건 =	6,000		
< 재난안전관리과 >	400		
◎ 민방위의무 과태료 50,000원*8명 =	400		
< 지역교통과 >	1,056,000		
◎ 주정차위반과태료 ((50,000원*120건)+(40,000원*1,700건))*12월 =	888,000		
◎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0,000원*4,500건 =	90,000		
◎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400,000원*15건 =	6,000		
◎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00,000원*500건 =	50,000		
◎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(1,000,000원*17건)+(200,000원*15건) =	20,000		
◎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50,000원*20건 =	1,000		
◎ 화물운수 과징금(과태료) 100,000원*10건 =	1,000		
< 지적과 >	3,100		
◎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300,000원*5건 =	1,500		
◎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200,000원*8건 =	1,600		
< 보건소 >	5,000		
◎ 약사법 위반 과태료 5,000,000원*1년 =	5,000		
228-09 기타잡수입	32,716	17,120	15,596
[일반회계]	32,716		
< 총무과 >	800		
◎ 선거인명부및부재자신고명부 사본작성 교부비용 500,000원 =	500		
◎ 예비후보자 세대주 명단 작성 교부비용 300,000원 =	300		
< 문화공보과 >	5,040		

장 : 200 세외수입
관 : 220 임시적세외수입
항 : 228 잡수입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◎ 남구사랑 광고 수입 60,000원*7건*12월 =	5,040		
< 세무과 >	10,000		
◎ 기타잡수입 10,000,000원 =	10,000		
< 환경관리과 >	15,376		
◎ 재활용품선별장 부지 사용료 15,376,000원*1년 =	15,376		
< 지적과 >	1,500		
◎ 연체료 1,500,000원*1년 =	1,500		
229 지난년도수입	886,400	854,517	31,883
229-01 지난년도수입	886,400	854,517	31,883
[일반회계]	886,400		
< 복지지원과 >	11,000		
◎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체납액 1,000,000원*10건*1년 =	10,000		
◎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100,000원*10건*1년 =	1,000		
< 지역교통과 >	873,400		
◎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(50,000원*600건)+(40,000원*16,000건) =	670,000		
◎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체납액 20,000원*6,000건 =	120,000		
◎ 자동차관리법과태료 체납액 100,000원*800건 =	80,000		
◎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체납액 50,000원*8건 =	400		
◎ 화물운수 과징금(과태료) 체납액 100,000원*30건 =	3,000		
< 지적과 >	2,000		
◎ 국공유재산 대부료, 변상금, 연체료 2,000,000원*1년 =	2,000		
300 지방교부세	5,100,000	3,400,000	1,700,000
310 지방교부세	5,100,000	3,400,000	1,700,000
311 지방교부세	5,100,000	3,400,000	1,700,000
311-01 지방교부세	5,100,000	3,400,000	1,700,000
[일반회계]	5,100,000		
< 세무과 >	5,100,000		
◎ 지방교부세법에의한 교부세 수입 5,100,000,000원 =	5,100,000		
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	38,673,088	38,021,000	652,088
410 조정교부금	38,000,000	38,021,000	△21,000
411 조정교부금	38,000,000	38,021,000	△21,000
411-01 조정교부금	38,000,000	38,021,000	△21,000
[일반회계]	38,000,000		

장 :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
관 : 410 조정교부금
항 : 411 조정교부금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< 기획감사실 >	38,000,000		
◎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8,000,000,000원 =	38,000,000		
420 재정보전금	673,088	0	673,088
421 재정보전금	673,088	0	673,088
421-01 재정보전금	673,088	0	673,088
[일반회계]	673,088		
< 세무과 >	673,088		
◎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673,088,000원 =	673,088		
500 보조금	59,447,462	41,858,541	17,588,921
510 국고보조금등	37,678,483	24,974,828	12,703,655
511 국고보조금등	37,678,483	24,974,828	12,703,655
511-01 국고보조금	35,674,976	21,661,158	14,013,818
[일반회계]	35,674,976		
< 총무과 >	12,033		
◎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 10,233,000원 =	10,233		
◎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1,800,000원 =	1,800		
< 문화공보과 >	125,000		
◎ 전통사찰보존 지원	125,000		
○ 법장사 대웅전 보수 50,000,000원 =	50,000		
○ 안일사 요사채 단청 보수 75,000,000원 =	75,000		
< 정보통신과 >	60,170		
◎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 60,170,000원 =	60,170		
< 주민생활지원과 >	15,501,076		
◎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(7,981명) 10,368,863,000원 =	10,368,863		
◎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(601명) 780,452,000원 =	780,452		
◎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(8,076명) 2,964,061,000원 =	2,964,061		
◎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위탁비 12,902,000원*1년 =	12,902		
◎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(830명) 424,165,000원 =	424,165		
◎ 기초생활보장 해산.장제급여(198명) 65,923,000원 =	65,923		
◎ 차상위 양곡할인지원(1,217포) 20,558,000원 =	20,558		
◎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(바우처사업) 604,169,000원*1년 =	604,169		
◎ 긴급복지지원사업(195가구) 243,355,000원 =	243,355		
◎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6,628,000원 =	16,628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10 국고보조금등
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< 복지지원과 >		19,593,500		
◎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	2,028,672,000원*1년 =	2,028,672		
◎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	2,761,842,000원*1년 =	2,761,842		
◎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	484,686,000원*1년 =	484,686		
◎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	225,096,000원*1년 =	225,096		
◎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	115,008,000원*1년 =	115,008		
◎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 운영비	373,932,000원*1년 =	373,932		
◎ 교재교구비	22,050,000원*1년 =	22,050		
◎ 차량운영비	2,880,000원*1년 =	2,880		
◎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	29,100,000원*1년 =	29,100		
◎ 보육시설환경개선	81,595,000원*1년 =	81,595		
◎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	361,020,000원*1년 =	361,020		
◎ 노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	490,000원*1년 =	490		
◎ 노인돌보미 바우처	117,169,000원*1년 =	117,169		
◎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	176,610,000원*1년 =	176,610		
◎ 노인일자리마련사업추진 인건비	196,930,000원*1년 =	196,930		
◎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재료구입	8,645,000원*1년 =	8,645		
◎ 노인일자리마련사업	430,540,000원*1년 =	430,540		
◎ 기초노령연금	6,786,865,000원*1년 =	6,786,865		
◎ 노인장기요양3차시범사업비	297,396,000원*1년 =	297,396		
◎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	15,000,000원*1년 =	15,000		
◎ 청소년 문화존 사업	19,250,000원*1년 =	19,250		
◎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	76,945,000원*1년 =	76,945		
◎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지원	169,541,000원*1년 =	169,541		
◎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	1,580,648,000원*1년 =	1,580,648		
◎ 기초생활보장 자활장려금	138,235,000원*1년 =	138,235		
◎ 기초생활보장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비	22,320,000원*1년 =	22,320		
◎ 고용촉진훈련(22명)	43,654,000원*1년 =	43,654		
◎ 가사간병도우미사업	383,238,000원*1년 =	383,238		
◎ 아동복지교사 지원	67,200,000원*1년 =	67,200		
◎ 아동복지시설 확충	12,537,000원*1년 =	12,537		
◎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	30,134,000원*1년 =	30,134		
◎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	66,000,000원*1년 =	66,000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10 국고보조금등
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◎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	9,240,000원*1년 =	9,240		
◎ 입양수수료 지원	7,350,000원*1년 =	7,350		
◎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	45,360,000원*1년 =	45,360		
◎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,교육비 지원	172,328,000원*1년 =	172,328		
◎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	35,000,000원*1년 =	35,000		
◎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	71,162,000원*1년 =	71,162		
◎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	140,000,000원*1년 =	140,000		
◎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	28,935,000원*1년 =	28,935		
◎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	63,336,000원*1년 =	63,336		
◎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	43,568,000원*1년 =	43,568		
◎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	3,066,000원*1년 =	3,066		
◎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	2,132,000원*1년 =	2,132		
◎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	19,368,000원*1년 =	19,368		
◎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사업 지원	8,971,000원*1년 =	8,971		
◎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	43,893,000원*1년 =	43,893		
◎ 직업훈련사업	7,840,000원*1년 =	7,840		
◎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(장애인활동보조)	272,720,000원*1년 =	272,720		
◎ 중증장애인자립센터운영	45,000,000원*1년 =	45,000		
◎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	20,000,000원*1년 =	20,000		
◎ 장애수당(1,745명) 지급	1,145,970,000원*1년 =	1,145,970		
◎ 장애아동부양수당(132명) 지급	162,400,000원*1년 =	162,400		
◎ 장애인 자녀학비(8명) 지원	8,368,000원*1년 =	8,368		
◎ 장애인의료비(1,060명) 지원	41,760,000원*1년 =	41,760		
◎ 장애인 재활보조기구(27명) 교부	2,460,000원*1년 =	2,460		
◎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(8명)	6,140,000원*1년 =	6,140		
◎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사업(12명)	427,500원*12명*12월 =	61,560		
◎ 장애인 등록진단비(35명) 지원	345,000원*1년 =	345		
< 지역경제과 >		226,646		
◎ 쌀소득등보전직불제	140,000,000원 =	140,000		
◎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경상비	140,000원 =	140		
◎ 산불방지대책(경상보조)	3,471,000원 =	3,471		
◎ 산불방지대책(자본보조)	18,000,000원 =	18,000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10 국고보조금등
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◎ 산림보호강화사업	29,429,000원 =	29,429		
◎ 산림 병해충 방제	6,000,000원 =	6,000		
◎ 도시녹지관리단 운영	29,606,000원 =	29,606		
< 환경관리과 >		15,000		
◎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(암롤트럭, 5톤)	15,000,000원 =	15,000		
< 재난안전관리과 >		8,328		
◎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	445,000원 =	445		
◎ 통대장 교육여비	645,000원 =	645		
◎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	572,000원 =	572		
◎ 인력동원 훈련보상(20명)	1,400,000원 =	1,400		
◎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	5,266,000원 =	5,266		
< 보건소 >		133,223		
◎ 시험관시술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	54,675,000원*1년 =	54,675		
◎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	65,894,000원*1년 =	65,894		
◎ 취약계층생애주기별건강진단 자치단체경상보조	7,924,000원*1년 =	7,924		
◎ 영유아 건강검진사업	4,730,000원*1년 =	4,730		
511-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		1,117,000	2,150,000	△1,033,000
[일반회계]		1,117,000		
< 문화공보과 >		480,000		
◎ 대덕문화전당 리모델링	480,000,000원 =	480,000		
< 복지지원과 >		7,000		
◎ 청소년 공부방 운영(슬기샘)	1,750,000원*4분기 =	7,000		
< 지역경제과 >		630,000		
◎ 영선 및 관문상가 시장 공동화장실 건립	600,000,000원 =	600,000		
◎ 지자체 도시숲 조성	30,000,000원 =	30,000		
511-03 기금		886,507	1,163,670	△277,163
[일반회계]		886,507		
< 문화공보과 >		77,530		
◎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지원		77,530		
○ 장수생활체육대학 운영	2,500,000원 =	2,500		
○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	3,000,000원 =	3,000		
○ 생활체육지도자 배치(6명)	61,740,000원 =	61,740		
○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	10,290,000원 =	10,290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10 국고보조금등
항 : 511 국고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< 보건소 >		808,977		
◎ 암조기검진 지자체보조	86,692,000원*1년 =	86,692		
◎ 암환자 의료비 지원	78,158,000원*1년 =	78,158		
◎ 보건소방문보건사업 지자체보조	120,019,000원*1년 =	120,019		
◎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	67,500,000원*1년 =	67,500		
◎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	79,070,000원*1년 =	79,070		
◎ 보건소암예방관리	1,290,000원*1년 =	1,290		
◎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	41,818,000원*1년 =	41,818		
◎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자체보조	150,750,000원*1년 =	150,750		
◎ 정신보건센터운영	75,000,000원*1년 =	75,000		
◎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	20,600,000원*1년 =	20,600		
◎ 국가만성병관리사업 지자체보조	22,415,000원*1년 =	22,415		
◎ 보건소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	7,500,000원*1년 =	7,500		
◎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검진	693,000원*1년 =	693		
◎ 에이즈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	4,785,000원*1년 =	4,785		
◎ 의치보철	24,450,000원*1년 =	24,450		
◎ 치아홈메우기	11,453,000원*1년 =	11,453		
◎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	9,187,000원*1년 =	9,187		
◎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	1,945,000원*1년 =	1,945		
◎ 산전후 프로그램 운영	5,652,000원*1년 =	5,652		
520 시,도비보조금등		21,768,979	16,883,713	4,885,266
521 시·도비보조금등		21,768,979	16,883,713	4,885,266
521-01 시·도비보조금등		21,768,979	16,883,713	4,885,266
[일반회계]		21,768,979		
< 총무과 >		38,446		
◎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	22,000,000원 =	22,000		
◎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	16,446,000원 =	16,446		
< 문화공보과 >		243,190		
◎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	37,200,000원 =	37,200		
◎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(분권1,875천원포함)	28,125,000원 =	28,125		
◎ 지방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(분권12,500천원포함)	18,750,000원 =	18,750		
◎ 문화학교 운영(분권4,400천원포함)	4,400,000원 =	4,400		
◎ 전통사찰보존 지원		62,500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20 시,도비보조금등
항 : 521 시 · 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 · 관 · 항 · 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○ 법장사 대웅전 보수	25,000,000원 =	25,000		
○ 안일사 요사채 단청 보수	37,500,000원 =	37,500		
◎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	12,600,000원 =	12,600		
◎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지원		40,015		
○ 장수생활체육대학 운영	1,250,000원 =	1,250		
○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	1,500,000원 =	1,500		
○ 생활체육지도자 배치(6명)	30,870,000원 =	30,870		
○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	1,250,000원 =	1,250		
○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	5,145,000원 =	5,145		
◎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	39,600,000원 =	39,600		
< 세무과 >		2,240		
◎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	2,240,000원 =	2,240		
< 정보통신과 >		22,960		
◎ 2007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	22,960,000원 =	22,960		
< 주민생활지원과 >		3,210,287		
◎ 사회복지직인건비(분권394,142천원포함)	394,142,000원 =	394,142		
◎ 생명의전화 대구상담소 지원(1개소)(분권24,850천원포함)	82,830,000원 =	82,830		
◎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(7,981명)	1,296,108,000원 =	1,296,108		
◎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(601명)	195,113,000원 =	195,113		
◎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(8,076명)	370,507,000원 =	370,507		
◎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위탁비	1,613,000원 =	1,613		
◎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(830명)	53,020,000원 =	53,020		
◎ 기초생활보장 해산.장제급여(198명)	8,240,000원 =	8,240		
◎ 차상위 양곡할인지원(1,217포)	2,570,000원 =	2,570		
◎ 공익근무요원 보상금(8명)(분권9,814천원포함)	9,814,000원 =	9,814		
◎ 긴급복지지원사업(195가구)	30,419,000원 =	30,419		
◎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비(1개소)	32,000,000원 =	32,000		
◎ 종합사회복지관 운영(분권87,381천원포함)	301,151,000원 =	301,151		
◎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비 추가지원	119,385,000원 =	119,385		
◎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(분권24,144천원포함)	64,487,000원 =	64,487		
◎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비	61,000,000원*1년 =	61,000		
◎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(바우처사업)	187,888,000원 =	187,888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20 시,도비보조금등
항 : 521 시 · 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 · 관 · 항 · 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< 복지지원과 >	16,315,434		
◎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946,714,000원*1년 =	946,714		
◎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1,288,860,000원*1년 =	1,288,860		
◎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26,187,000원*1년 =	226,187		
◎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05,045,000원*1년 =	105,045		
◎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53,670,000원*1년 =	53,670		
◎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 운영비 174,502,000원*1년 =	174,502		
◎ 교재교구비 10,290,000원*1년 =	10,290		
◎ 차량운영비 1,344,000원*1년 =	1,344		
◎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41,613,000원*1년 =	41,613		
◎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활성화지원(2개소) 10,000,000원*1년 =	10,000		
◎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2,080,000원*1년 =	22,080		
◎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4,600,000원*1년 =	54,600		
◎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13,580,000원*1년 =	13,580		
◎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2,250,000원*1년 =	2,250		
◎ 국공립, 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 23,700,000원*1년 =	23,700		
◎ 정부지원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11,650,000원*1년 =	11,650		
◎ 보육시설 환경개선 40,798,000원*1년 =	40,798		
◎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361,020,000원*1년 =	361,020		
◎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(분권186,240천원포함) 465,600,000원*1년 =	465,600		
◎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0,240,000원*1년 =	30,240		
◎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(분권4,357천원포함) 8,715,000원*1년 =	8,715		
◎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210,000원*1년 =	210		
◎ 노인복지회관 운영 180,000,000원*1년 =	180,000		
◎ 노인복지시설 운영비(분권966,000천원포함) 1,380,000,000원*1년 =	1,380,000		
◎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보호비 및 인건비 220,884,000원*1년 =	220,884		
◎ 노인돌보미 바우처 50,215,000원*1년 =	50,215		
◎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75,690,000원*1년 =	75,690		
◎ 노인일자리마련사업추진 인건비 196,930,000원*1년 =	196,930		
◎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재료구입 8,645,000원*1년 =	8,645		
◎ 노인일자리마련사업 430,540,000원*1년 =	430,540		
◎ 노인일거리마련사업(분권3,000천원포함) 6,000,000원*1년 =	6,000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20 시,도비보조금등
항 : 521 시 · 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 · 관 · 항 · 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◎ 시니어클럽 운영(분권105,000천원포함) 150,000,000원*1년 =	150,000		
◎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 3,000,000원*1년 =	3,000		
◎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15,000,000원*1년 =	15,000		
◎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 12,000,000원*1년 =	12,000		
◎ 기초노령연금(13,202명) 1,745,194,000원*1년 =	1,745,194		
◎ 경로승차요금(4,080명) 254,584,000원*1년 =	254,584		
◎ 경로식당무료급식(분권44,083천원포함) 88,166,000원*1년 =	88,166		
◎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(분권33,660천원포함) 67,320,000원*1년 =	67,320		
◎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(분권29,042천원포함) 46,879,000원*1년 =	46,879		
◎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 12,740,000원*1년 =	12,740		
◎ 노인건강진단(분권1,558천원포함) 2,270,000원*1년 =	2,270		
◎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 여비 20,000원*2명*25일 =	1,000		
◎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운영 4,900,000원*1년 =	4,900		
◎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8,472,000원 =	38,472		
◎ 청소년 공부방 운영(슬기샘) 1,250,000원*4분기 =	5,000		
◎ 청소년 문화존 사업 9,625,000원*1년 =	9,625		
◎ 자활후견기관 등 운영지원 72,660,000원*1년 =	72,660		
◎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122,939,000원*1년 =	122,939		
◎ 기초생활보장 자활장려금 10,752,000원*1년 =	10,752		
◎ 기초생활보장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비 1,736,000원*1년 =	1,736		
◎ 지역자활센터등 종사자 수당 12,960,000원*1년 =	12,960		
◎ 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 실비 보상(분권3,160천원포함) 3,406,000원*1년 =	3,406		
◎ 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 위탁운영비(분권1,620천원포함) 1,746,000원*1년 =	1,746		
◎ 고용촉진훈련(22명) 10,914,000원*1년 =	10,914		
◎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09,497,000원*1년 =	109,497		
◎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(분권1,617,033천원포함) 3,462,119,000원*1년 =	3,462,119		
◎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747,722,000원*1년 =	747,722		
◎ 아동복지시설 확충 12,537,000원*1년 =	12,537		
◎ 시설수급자 지원 11,988,000원*1년 =	11,988		
◎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49,500,000원*1년 =	49,500		
◎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결혼지원비 1,400,000원*1년 =	1,400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20 시,도비보조금등
항 : 521 시 · 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 · 관 · 항 · 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◎ 아동복지교사 지원 14,400,000원*1년 =	14,400		
◎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33,000,000원*1년 =	33,000		
◎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45,202,000원*1년 =	45,202		
◎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입학지원 3,600,000원*1년 =	3,600		
◎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하계수련비 지원 8,015,000원*1년 =	8,015		
◎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비 지원 6,760,000원*1년 =	6,760		
◎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레저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5,000,000원*1년 =	5,000		
◎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대학 등록금 지원 7,500,000원*1년 =	7,500		
◎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대학입학금 지원 12,000,000원*1년 =	12,000		
◎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예능교육비 지원 44,400,000원*1년 =	44,400		
◎ 가정위탁양육 지원 52,988,000원*1년 =	52,988		
◎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3,960,000원*1년 =	3,960		
◎ 입양수수료 지원 3,150,000원*1년 =	3,150		
◎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9,440,000원*1년 =	19,440		
◎ 아동급식 370,470,000원*1년 =	370,470		
◎ 시설아동 건강 검진비 675,000원*1년 =	675		
◎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사업 10,000,000원*1년 =	10,000		
◎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자립정착금 지원(분권6,000천원포함) 2,000,000원*6세대 =	12,000		
◎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, 교육비 지원 43,082,000원*1년 =	43,082		
◎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비 지원(20세대) 1,400,000원*1년 =	1,400		
◎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 1,000,000원*1년 =	1,000		
◎ 모자복지시설 지원(분권133,000천원포함) 195,000,000원*1년 =	195,000		
◎ 모자보호시설 시비특별지원 86,000,000원*1년 =	86,000		
◎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7,500,000원*1년 =	7,500		
◎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30,498,000원*1년 =	30,498		
◎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60,000,000원*1년 =	60,000		
◎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8,935,000원*1년 =	28,935		
◎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27,144,000원*1년 =	27,144		
◎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18,672,000원*1년 =	18,672		
◎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3,066,000원*1년 =	3,066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20 시,도비보조금등
항 : 521 시 · 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 · 관 · 항 · 목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◎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2,132,000원*1년 =	2,132		
◎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 8,300,000원*1년 =	8,300		
◎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시비 특별지원 17,130,000원*1년 =	17,130		
◎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3,845,000원*1년 =	3,845		
◎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사업 18,812,000원*1년 =	18,812		
◎ 직업훈련사업 3,360,000원*1년 =	3,360		
◎ 여성폭력 예방활동 지원 2,000,000원*1년 =	2,000		
◎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(장애인활동보조) 116,880,000원*1년 =	116,880		
◎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(장애인활동보조)시비추가지원 49,400,000원*1년 =	49,400		
◎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(분권25,200천원포함) 84,000,000원*1년 =	84,000		
◎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(분권43,056천원포함) 53,820,000원*2개소*1년 =	107,640		
◎ 중증장애인자립센터운영 67,500,000원*1년 =	67,500		
◎ 재가장애인복지봉사센터 운영 40,000,000원*1년 =	40,000		
◎ 재가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운영 40,000,000원*1년 =	40,000		
◎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(분권54,400천원포함) 34,000,000원*4개소*1년 =	136,000		
◎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20,000,000원*1년 =	20,000		
◎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 40,000,000원*1년 =	40,000		
◎ 장애수당(1,745명) 지급 491,130,000원*1년 =	491,130		
◎ 장애아동부양수당(132명) 지급 69,600,000원*1년 =	69,600		
◎ 장애인 자녀학비(8명) 지원 2,092,000원*1년 =	2,092		
◎ 장애인의료비(1,060명) 지원 10,440,000원*1년 =	10,440		
◎ 장애인 등록진단비(35명) 지원 345,000원*1년 =	345		
◎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(8명) 6,140,000원*1년 =	6,140		
◎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사업(9명) 427,500원*12명*12개월 =	61,560		
◎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(593명) 213,480,000원*1년 =	213,480		
◎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비(분권3,000천원포함) 10,000,000원*1년 =	10,000		
◎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(18명)(분권9,193천원포함) 9,193,000원*1년 =	9,193		
< 지역경제과 >	822,266		
◎ 영선 및 관문상가 시장 공동화장실 건립 200,000,000원 =	200,000		
◎ 유기동물 보호 13,527,000원 =	13,527		
◎ 양봉농가 지원 5,883,000원 =	5,883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20 시,도비보조금등
항 : 521 시 · 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 · 관 · 항 · 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◎ 공수의 운영	3,600,000원 =	3,600		
◎ 공공근로사업(분권291,083천원포함)	499,043,000원 =	499,043		
◎ 가로수 사후 관리사업	23,000,000원 =	23,000		
◎ 지자체 도시숲 조성	35,000,000원 =	35,000		
◎ 산불방지대책(경상보조)	17,430,000원 =	17,430		
◎ 산불방지대책(자본보조)	12,600,000원 =	12,600		
◎ 산림보호 강화사업	3,783,000원 =	3,783		
◎ 도시녹지관리단 운영	6,216,000원 =	6,216		
◎ 산림 병해충 방제	2,184,000원 =	2,184		
< 환경관리과 >		15,000		
◎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(암롤트럭, 5톤)	15,000,000원 =	15,000		
< 재난안전관리과 >		27,163		
◎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	520,000원 =	520		
◎ 통대장 교육여비	752,000원 =	752		
◎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	668,000원 =	668		
◎ 지역예비군 및 향토부대 육성지원	18,060,000원 =	18,060		
◎ 민방위 강사수당(실기)	2,530,000원 =	2,530		
◎ 풍수해 보험료 지원	2,000,000원 =	2,000		
◎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	2,633,000원 =	2,633		
< 지역교통과 >		37,000		
◎ 불법주정차 고정식무인단속시스템 구입설치	31,000,000원*2식*1/2 =	31,000		
◎ 민간인 질서계도반 보조	15,000원*5명*80일 =	6,000		
< 지적과 >		55,000		
◎ 국유재산관리	55,000,000원 =	55,000		
< 보건소 >		979,993		
◎ 암조기검진 지자체보조	43,346,000원*1년 =	43,346		
◎ 암환자 의료비 지원	39,079,000원*1년 =	39,079		
◎ 대도시맞춤형방문보건사업(분권22,680천원포함)	32,400,000원*1년 =	32,400		
◎ 보건소방문보건사업 지자체보조	60,009,000원*1년 =	60,009		
◎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	33,750,000원*1년 =	33,750		
◎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	39,535,000원*1년 =	39,535		
◎ 보건소암예방관리	645,000원*1년 =	645		
◎ 취약계층생애주기별건강진단 자치단체경상보조	1,039,000원*1년 =	1,039		

장 : 500 보조금
관 : 520 시,도비보조금등
항 : 521 시 · 도비보조금등

(단위:천원)

장 · 관 · 항 · 목		예산액	전년도예산액	비교증감
◎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	20,300,000원*1년 =	20,300		
◎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자체보조	75,375,000원*1년 =	75,375		
◎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(분권290,330천원포함)	414,758,000원*1년 =	414,758		
◎ 정신보건센터운영	37,500,000원*1년 =	37,500		
◎ 치매사업(분권2,500천원포함)	5,000,000원*1년 =	5,000		
◎ 시험관시술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	27,337,000원*1년 =	27,337		
◎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	8,237,000원*1년 =	8,237		
◎ 보건소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	3,750,000원*1년 =	3,750		
◎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검진	520,000원*1년 =	520		
◎ 출산축하금지원사업	78,276,000원*1년 =	78,276		
◎ 에이즈및성병예방 지자체보조	4,785,000원*1년 =	4,785		
◎ 구강보건진료실운영	8,000,000원*1년 =	8,000		
◎ 의치보철	12,225,000원*1년 =	12,225		
◎ 치아홈메우기	5,726,000원*1년 =	5,726		
◎ 국가만성병관리사업 지자체보조	17,120,000원*1년 =	17,120		
◎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	6,891,000원*1년 =	6,891		
◎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	973,000원*1년 =	973		
◎ 산전후 프로그램 운영	2,826,000원*1년 =	2,826		
◎ 영유아 건강증진사업	591,000원*1년 =	591		